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림업성 대표와 중화 인민 공화국 림업부 대표간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물통을 건설할데 관한 합 의 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림업성 대표와 중화 인민 공화국 림업부 대표는 1966년 3월 27일 부터 1966년 4월 8일까지 단동시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으로부터 대표 최 익준, 김 대보, 김 국룡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측으로부터 대표 리 자민, 진 지량, 판 세찬, 기 옥복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간에 체결한 〈압록강 과 두만강 에서의 목재 운송에 관한 의정서〉 및 보충 의정서 정신에 근거하여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압록강 과 두만강에 물통을 건설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쌍방은 압록강 상류, 조선측 량강도 보천군 농산 목조물통으로부터 농산역까지의 구간내, 중국측 길림성 장백현 이전 농산 변방초소로부터 상류 1·6키로 메터 구간내에 콩크리트 물통 1개소를 건설하며, 두만강 상류, 조선측 량강도 삼지연군 삼장리 구역내, 중국측 길림성 화룡현 송선대대 구역내에 목조물통 1개소를 건설하는데

합의한다。

2, 상술한 두개 물동의 구체적 위치 및 기타 실무적 문제는 쌍방이 지정한 대표들이 1966년 4월중에 조선측 혜산시 와 삼지연군 삼장리, 혹은 중국측 장백현 과 화룡현 료성리에서 각각 회합을 진행하고 로의 해결한다。

3, 상술한 두개 물동에 대한 투자, 자재, 설계, 시공 및 관리는 조선측이 책임 진다。 앞으로 중국측이 상술한 압록강의 물동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조선측은 이에 동의한다。 중국측이 물동을 리용하게 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투자 및 공동관리 등 실무적 문제는 조중 량국 림업성, 부 대표간에 로의 해결한다。

4, 중국측은 장백현 이전 농산 변방초소의 가옥을 조선측 시공 인원들이 그중 15칸을 림시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조선측은 물동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중국측에 반환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합의서는 1966년 4월 8일 단동시에서 서명하였으며 조선문 과 중국문으로 각각 2부씩 작성된 이 두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림업성 대표 최 일 준

중 화 인 민 공 화 국 림업부 대표 李子民